###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142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·제조 시설 등을 설치·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,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·교육관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·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"해양수산부령으로"를 "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"해양수산부령으로"를 "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4조(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)	제14조(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	4		
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			
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		
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	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		
	치단체의 조례로		
제15조(전시 및 홍보 등) ①・②	제15조(전시 및 홍보 등) ①・②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	③		
•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			
대상・기준・절차・방법 등에			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해양수산</u>	해양수산		
<u>부령으로</u> 정한다.	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		
	조례로		